

【 6 】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1999. 7. 24.

제출자 : 양주군수

□ 제안이유

- 경기 세정13400~132('99.1.19)호로 시달된 시·군감면조례에 대한 개정권고안에서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바, 지방세법 제276조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는 농공단지는 아니므로 우리군과 관련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의2)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22조의3”을 “제22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2節 地方稅

● 地方稅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61 · 12 · 8	法律第 827號
改正	1962 · 12 · 29	法律第1243號
	1963 · 12 · 14	法律第1514號
	1966 · 8 · 3	法律第1803號
	1967 · 10 · 28	法律第1958號
	1967 · 11 · 29	法律第1977號
	1970 · 1 · 1	法律第2149號
	1973 · 3 · 12	법률 제2593호
	1974 · 12 · 27	法律第2743號
	1976 · 12 · 31	法律第2945號
	1976 · 12 · 31	法律第2950號(國有財產法)
	1978 · 12 · 6	法律第3154號
	1979 · 4 · 16	法律第3160號
	1979 · 12 · 28	法律第3174號
	1981 · 1 · 29	法律第3357號(礦業法)
	1981 · 12 · 31	法律第3488號
	1982 · 11 · 29	法律第3572號(韓國觀光公社法)
	1984 · 8 · 8	法律第3752號(產業研究院法)
	1984 · 12 · 15	法律第3754號(行政訴訟法)
	1984 · 12 · 24	法律第3757號
	1986 · 12 · 31	法律第3878號
	1986 · 12 · 31	法律第3910號(觀光振興法)
	1986 · 12 · 31	法律第3912號(自動車管理法)
	1988 · 4 · 6	法律第4007號
	1988 · 12 · 26	法律第4028號
	1988 · 12 · 31	法律第4064號(韓國 담배人蔘公社法)
	1988 · 12 · 31	法律第4066號(人蔘協同組合法)
	1988 · 12 · 31	法律第4069號(保險業法)
	1988 · 12 · 31	法律第4073號(國家有功者등團體設立에 관한法律)
	1989 · 6 · 16	法律第4128號
	1990 · 1 · 13	法律第4212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0 · 1 · 13	法律第4216號(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1990 · 4 · 7	法律第4225號
	1990 · 4 · 7	法律第4228號(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 · 12 · 31	法律第4269號
	1991 · 1 · 14	法律第4332號(韓國產業人力管理公團法)
	1991 · 12 · 14	法律第4415號
	1993 · 6 · 11	法律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3 · 12 · 27	法律第4611號
	1993 · 12 · 27	法律第4655號(韓國資源再生公社法)
	1994 · 1 · 7	法律第4720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4 · 12 · 22	法律第4794號
	1994 · 12 · 31	法律第4856號(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1995 · 1 · 5	法律第4927號(交通安全振興公團法)
	1995 · 8 · 4	法律第4960號
	1995 · 12 · 6	法律第4995號
	1995 · 12 · 29	法律第5091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5 · 12 ·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 · 1 · 13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등 種遇 및 지원에 관한法律)
	1997 · 8 · 30	法律第5406號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 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 에 관한法律)
	1997 · 12 · 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1997 · 12 · 24	法律第5476號(韓國產業人力公團法)
	1998 · 12 · 28	法律第5598號(草納에 관한法律廢止法律)
	1998 · 12 · 31	法律第5615號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⑦青少年基本法에 의하여 青少年修鍛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非營利法人이 青少年修鍛施設을 設置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課稅基準日 현재 青少年修鍛施設로 직접 사용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⑧軍人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軍人共濟會·大韓地方行政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地方行政共濟會 및 大韓敎員共濟會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敎員共濟會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會員用 共同住宅을 建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全文改正 97·8·30)

第3節 地域均衡開發을 위한 減免

第274條 (法人의 地方移轉에 따른 減免) ①首都圈整備計劃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過密抑制圈域(이하 이 節에서 “過密抑制圈域”이라 한다)안에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設置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法인이 당해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賣却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이하 이 節에서 “大都市”라 한다)외의 地域으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한다.

②大都市내에 登記되어 있는 法인이 大都市외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그 移轉에 따른 法人登記 및 不動產登記에 대하여 登錄稅를 免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都市외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30, 98·12·31>

(本條新設 94·12·22)

第275條 (工場의 地方移轉에 따른 減免) ①大都市내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者가 그 工場을 閉鎖하고 大都市외의 地域으로서 工場設置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地域으로 移轉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本條新設 94·12·22)

第276條 (產業園地에 대한 減免) ①產業立地및開發에 관한法律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園地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에 의한 誘致地域안에서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増築하고자 하는 者(工場用 不動產을 中小企業者에게 貸貸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

(주 103)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고. 그 不動產에 대한 財產稅와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工場用 不動產의 取得日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場用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賣却하는 경우(당해 產業園地管理機關 또는 당해 產業園地管理機關이 지정하는 者가 遷賣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の 非業務用土地가 되는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園地開發事業의 施行者가 産業園地를 造成한 후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増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稅를 減免한다. 다만, 産業園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취득한 不動產의 取得日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園地를 造成하지 아니하거나, 工事가 완료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1. 産業園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 및 産業園地 造成工事が 완료된 후에 工場用 建築物을 新築하거나 增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한다.
2. 産業園地내에서 新築하거나 增築한 工場用 建築物에 대한 財產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3. 産業園地 造成工事が 施行되고 있는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4. 産業園地 造成工事が 완료(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土地에 대한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성립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④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園地開發事業施行者 및 벤처企業育成에 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지정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事業施行者가 産業園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開發·造成하여 分讓 또는 貸貸할 目的으로 취득(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遷賣權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不動產(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産業園地公園의 경우는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45條의 7第3項第4號 및 同項第6號의 事業用不動產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財產稅 및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産業園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開發·造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

를 追徵한다.

(全文改正 97·8·30)

第277條 (觀光團地開發等에 대한 減免) ①觀光振興法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施行者가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土地 및 建築物의 取得日부터 1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觀光團地開發事業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輕減된 取得稅와 登錄稅를 追徵한다.

②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促進地區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者가 同法에 의하여 告示된 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財產稅와 綜合土地稅는 納稅義務가 成立되는 날부터 5年간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다만, 取得日부터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賣却하는 경우에는 減免된 取得稅·登錄稅·財產稅 및 綜合土地稅를 追徵한다. <新設 97·8·30>

(本條新設 94·12·22)

第278條 (備蓄·供給用 土地에 대한 減免) ①韓國土地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土地公社와 大韓住宅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住宅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第三者에게 供給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을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改正 95·12·29 法5109>

②韓國水資源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水資源公社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分讓을 目的으로 취득하는 團地造成用土地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③韓國컨테이너埠頭公園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컨테이너埠頭公園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따라 港灣施設開發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取得稅와 登錄稅를 免除하고, 綜合土地稅의 100分의 50을 輕減한다. <新設 95·12·6>

(本條新設 94·12·22)

第279條 (宅地開發事業地區내의 公共施設物등에 대한 減免) ①第278條 및 第2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취득하는 土地 및 建築物中 宅地開發事業地區 및 團地造成事業地區내의 土地 또는 建築物로서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無償으로 귀속될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와 公共施設用地에 대하여는 財產稅·綜合土地稅·都市計劃稅 및 共同施設稅를 免除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物 및 그 附屬土地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節 產業立地 및 開發

●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制定	1990 · 1 · 13	法律第4216號
改正	1990 · 12 · 27	法律第4268號(政府組織法)
	1991 · 3 · 8	法律第4358號(港灣法)
	1991 · 12 · 14	法律第4429號(水道法)
	1993 · 3 · 6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1993 · 8 · 5	法律第4574號
	1994 · 3 · 24	法律第4748號(砂防事業法)
	1995 · 1 · 5	法律第4891號(에너지利用合理化法)
	1995 · 12 · 29	法律第5111號
	1997 · 12 ·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 2 · 5	法律第5803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產業立地의 원활한 供給과 產業의合理的配置를 통하여 균형있는 國土開發과 持續的인 產業發展을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전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5 · 12 · 29>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 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工場을 말한다.
2. “知識產業”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開發業 · 研究開發業 · 엔지니어링서비스업 · 廣告物作成業 · 패션디자인업등 전문분야에서의 知識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高附加價值의 知識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產業을 말한다.
3. “情報通信產業”이라 함은 情報化促進基本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과 관련된 產業을 말한다.
4. “資源儲蓄施設”이라 함은 石炭 · 石油 · 原子力 · 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 · 貯藏 · 供給등을 위한 施設과 이에 관련된 施設을 말한다.
5. “產業園地”라 함은 工場 · 知識產業關聯施設 · 情報通信產業關聯施設 · 資源儲蓄施設과 관련 教育 · 情報處理 · 流通施設 및 이들 施設의 機能提高를 위하여 施設의 從事者와 利用者를 위한 住居 · 文化 · 醫療 · 觀光 · 體育 · 福祉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設置하기 위하여 포괄적 計劃에 따라 지정 · 開發되는 一團의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2章 國土開發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土地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國家產業團地 : 國家基幹產業·尖端科學技術產業등을 육성하거나 開發促進이 필요한 落後地域이나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에 걸치는 地域을 產業團地로 開發하기 위하여 第 6 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 나. 地方產業團地 : 產業의 적정한 地方分散을 촉진하고 地域經濟의 活性화를 위하여 第 7 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 다. 農工團地 :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漁村地域에 農漁民의 所得增大를 위한 產業을 誘致·육성하기 위하여 第 8 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產業團地
- 6. “產業團地開發事業”이라 함은 產業團地를 造成하기 위하여 施行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가. 工場·知識產業關聯施設·情報通信產業關聯施設·資源備蓄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 나. 尖端科學技術產業의 발전을 위한 教育施設用地造成事業
 - 다. 產業團地의 효율증진을 위한 情報處理施設·展示施設·流通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 라. 產業團地의 機能提高를 위한 住居施設·文化施設·醫療福祉施設·體育施設·觀光休養施設등의 用地造成事業 및 公園造成事業
 - 마. 工業用水와 生活用水의 供給施設事業
 - 바. 道路·鐵道·港灣·軌道·運河·溜水池 및 賯水池建設事業
 - 사. 電氣·通信·가스·油類 및 原料등의 需給施設事業
 - 아. 下水道·廢棄物處理施設 기타 環境污染防治施設事業
 -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全文改正 95·12·29)

第 3 條 (產業立地政策審議會) ① 產業立地政策에 관한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에 產業立地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地方產業團地의 지정·開發에 관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및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市·道에 地方產業團地審議會를 둘 수 있다.

④ 地方產業團地審議會의 機能·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道의 條例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1. 產業立地政策의 기본 방향
2. 地域別·業種別·產業團地 種類別 供給展望
3. 地域別·業種別·產業團地 種類別 產業用地의 供給에 관한 사항
4. 產業立地供給計劃의 원활한 施行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立地供給計劃은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配置基本計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第5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立地供給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條의3 (產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 ①建設交通部長官은 產業情報의 원활한 需給과 產業立地政策에 필요한 情報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와 공동으로 產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政府出捐機關등 關聯機關의 長에게 產業立地情報網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特別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立地情報網을 구성·운영하는 者는 產業立地情報網의 운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④產業立地情報網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3章 工業團地의 지정

第6條 (國家產業團地의 지정) ①國家產業團地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지정한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產業團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對象地域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國家產業團地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產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產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產業團

(주 70)

第33編 國土開發・都市 第2章 國土開發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團地開發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產業團地開發計劃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產業團地의 지정후에 第3號의 產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第8號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產業團地開發計劃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產業團地의 명칭 · 位置 및 면적
2. 產業團地의 指定目的
3. 產業團地開發事業의 施行者
4. 事業施行方法
5. 主要誘致業種
6. 土地利用計劃 및 主要基盤施設計劃
7. 財源調達計劃
8. 牧用 · 사용할 土地 · 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그 組目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全文改正 95·12·29)

第7條 (地方產業團地의 지정) ①地方產業團地는 市 · 道知事가 지정한다. <改正 95·12·29>

②市 · 道知事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產業團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產業團地開發計劃을 수립하여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產業團地開發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조한 같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地方產業團地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④市 · 道知事은 地方產業團地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면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면적미단인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없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市 · 道知事은 그 지정내용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⑤第6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團地開發計劃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3·8·5, 95·12·29>

⑥市 · 道知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과의 協議過程에서 關

(추 70)

第33編 國土開發 · 都市 第2章 國土開發 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係機關간의 意見調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으며, 調整을 요청받은 建設交通部長官은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調整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7條의2 (產業園地지정의 告示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및 市 · 道知事은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園地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宣報 또는 公報에 告示하고, 관계書類의 사본을 관할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產業園地로 지정되는 地域안에 收用 · 사용할 土地 · 建築物 기타 물건이나 權利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內容에 그 土地등의 細目을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書類를 송부받은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은 이를 一般人이 閲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3·8·5)

第8條 (農工園地의 지정) ①農工園地는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이 지정한다. <改正 93·8·5>

②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園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 市 · 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이 農工園地를 지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9條 (工業地域의 活用) 市 · 道知事,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은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工業地域으로 지정된 地域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產業園地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3·8·5, 95·12·29>

第10條 (住民등의 意見聽取) ①建設交通部長官, 市 · 道知事, 市長 · 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產業園地指定權者”라 한다)은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產業園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住民 및 관계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國防상 機密을 요하는 경우에는 의견의 聽取를 생략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 및 관계專門家의 의견 聽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民間企業등의 產業園地지정요청)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는 產業園地開發計劃을 작성하여 建設交

명 기 도 지

주)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산로3가 1번지 / ☎(033) 249-2311 / FAX(033) 249-2319
세정과 / 과장 최 원 훈 / 달달자 서 정 국



문서번호 세정 13400 - 132

시행일자 1999. 1. 19. (수)

(경우)

발신 발신처 찰주

한국

선행		지시
제	일자	1999. 1. 19.
수	시간	
번호	1030 (h)	제
차회	국	10월
발령자		

제록 시·군세 갑연조례증 개정조례(안)

- 세제13400-22(99. 1. 13)호의 관련입니다.
- 시·군세 갑연조례증 개정조례안(농공단지 대체 일주자에 대한 지방세 갑연)을 제출과 함께 종료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후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갑연세율, 갑연기간 및 갑연대상 농공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275조의 규정에 의한 갑연법위 안에서 단단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시·군세 갑연조례증 개정조례(안) 2부

명 기 도 지



전결 자치행정국장 황준기

발신처 세정(세부·부과·징수·채무)과장

□ 조례개정사유

○ 감사원 육일 16330-207('98.10.24)호로

- 농공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기업은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 총·폐업업체를 인수하는 대체입주업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농공단지 부실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활성화대책 마련 요구와 관련이

○ 현재 지방세법 제276조에서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 감면혜택을 주려면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함이 원칙이나
- 지방세법 제276조를 개정할 경우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 산업단지까지 감면이 확대되는 문제가 있고
- 또한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대체입주업체에 대한 감면조치가 없어도 농공단지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확대 필요성이 없는 농공단지까지 감면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성을 살펴하여 감면 필요성이 있는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 시기는 것임

○○시·군·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시·군·구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 "지역발전등을 위한 강변"에 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농공단지 대체일주자에 대한 강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준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농공단
지에 ○○년 12월 31일까지 대체일주하는 자(혹은 폐업된 공장에 대
체일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
각 ○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농공단지
2. ○○ 농공단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적용요령

1. 각호에 규정하는 농공단지는 후·폐업 업체가 증가하여 농공단
지 활용화 대책이 필요한 농공단지로 선별하여 열거 규정할
2. 감면대상 기한은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기한으로
정하되 3~5년 이내로 할
3. 감면기한은 최초입주자의 감면기한인 5년 범위안에서 정할

양주군조례 제 호

체계. 자구 확인 필



양주군군세감면조례 증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에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산업단지 대체일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 일자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일주하는 자(휴·폐업된 등장에 대체일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2조의3(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양주군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제2호 및 등조 제5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할에 있어서는 등별 제9조 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등제)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부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경기 세정 13400-132(99.1.19)호로 시달된 시·군세감면조례에 대한 개정권고안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하여만 한시적으로 시·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바, 지방세법 제276조와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는 농공단지는 아니므로 우리군과 관련이 없어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양주도하지방공업단지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함)가 취득하는 당해 공업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감면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안 제22조의2)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세법 제27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예고예외

기타참고사항 : “별첨”

경기 세정 13400-132(99.1.19)시·군세감면조례개정권고안

양주군군세감면조례